대구광역시 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477

제출연월일 : 2023. 9. 27.
제 출 자 : 서구청장

1. 제정이유

○ 우리 구 미래교육지구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원칙과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여 학교와 마을간 교육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지원

○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기반 마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사업의 범위(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미래교육지구사업 지원(안 제4조 ~ 안 제8조)

1) 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비용부담) 시 교육청, 교육지원청과 상호 협의하여 부담

3) (사업지원) 교육지원청, 학교, 교육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 교육참여자 등에 보조금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

4) (센터 설치 및 운영)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사업의 개발과 운영 지원

다. 미래교육지구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안 제9조 ~ 안 제18조)

1) 설치 및 기능

2) 구성 및 회의 등

3) 위원의 임기, 해촉, 수당 등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5조

2) 「진로교육법」 제5조

3) 「청소년기본법」 제8조, 제47조, 제48조

4) 「청소년활동진흥법」

나. 예산조치: 구 사업비 및 교육청 공모사업비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3. 8. 18. ~ 9. 7.

나) 예고결과: 제출의견 및 부서 검토의견 붙임

2)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 아님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수정동의

5)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붙임

6)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의결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와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대구광역시 서구 각급 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역량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지역사회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대구광역시 서구 내(이하 “관내”라 한다)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동일 연령층의 청소년을 말한다.
2. “미래교육지구”란 미래교육지구사업을 위해 교육부 또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이하 “시 교육청”이라 한다)이 관내에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3. “미래교육지구사업”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 교육청,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민·관·학 거버넌스”란 미래교육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행정기관, 교육 관련 기관·단체, 학교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미래교육지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
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3.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활동 및 축제 지원
4. 지역사회 및 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특화 사업
5. 교육 관련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6. 교육기반시설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8.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평가 및 성과 보고
9.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미래교육지구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원활한 미래교육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 시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사업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구의 미래교육지구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 부담) 미래교육지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구와 시 교육청, 교육지원청이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6조(사업지원 등)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교육 관련 기관·단체에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고, 교육지원청, 학교, 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 교육참여자 등

에 예산의 범위에서 프로그램 운영 관련 경비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구에 미래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관내에 설치하며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 1명의 센터장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운영을 총괄한다.

③ 센터장은 구의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 과장이 겸임하거나, 외부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전문가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미래교육 정책방향 및 계획(중·장기 포함) 수립에 관한 사항

2. 미래교육지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 미래교육지구사업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운영협의회의 구성 등) ① 운영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③ 운영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구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 국장

나. 시 교육청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 과장

다. 교육지원청의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

나.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장

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생의 부모

라. 관내 유관기관 대표, 교육 관련 전문가 등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공동위원장 2명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 합의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 과장과 교육지원청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1조(운영협의회 운영) ①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운영협의회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며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③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운영협의회가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획·조정하기 위하여 실

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조정한다.

1. 운영협의회 위임 안건의 협의·검토 및 제안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 미래교육지구사업의 컨설팅, 실무지원 및 실행점검(모니터링 포함)

3. 민·관·학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사업과 관련된 사항

제13조(실무협의회의 구성) ① 실무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동위원장은 구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 과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구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 팀장

나. 시교육청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 장학관 및 담당자

다. 교육지원청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 장학사 및 팀장, 업무담당자

2. 위촉직 위원: 위원이 될 필요가 있다고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

는 구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 공무원(담당자)으로 한다.

④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를 대표하고,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분과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그 밖에 위원의 위촉 등 실무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14조(실무협의회 운영) ①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실무협의회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며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운영협의회, 실무협의회, 분과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운영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리거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의견의 청취)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시 교육청, 교육지원청 소속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교육기본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56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진로교육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30호, 2022. 12. 27., 일부개정]

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全人的)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청소년활동 진흥법(약칭: 청소년활동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58호, 2022. 6. 10., 타법개정]

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21.]

【붙 임 3】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대구미래교육지구 지정 운영에 따른 사업비

○ 사업의 범위: 안 4조

나. 관련조문 : 사업지원(안 5조, 6조)

○ **제5조(비용 부담)** 미래교육지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구와 시교육청,교육지원청이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 **제6조(사업지원)**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 교육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 교육참여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프로그램운영 관련 경비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대구광역시 교육청 미래교육지구 지정 · 운영

나. 추계결과

○ 서구미래교육지구 운영 사업비: 1,850,000천원(5년간)

○ 재원조달방안: 1,850,000천원(교육청 공모사업비)

※ 향후 사정에 따라 재원조달방안이 변경될 수 있음.

3.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4. 작성자 :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수입)		370,000	370,000	370,000	370,000	370,000	**1,850,000**
세 출 (지출)		370,000	370,000	370,000	370,000	370,000	**1,850,000**
소 계		370,000	370,000	370,000	370,000	370,000	**1,850,000**
사업비		370,000	370,000	370,000	370,000	370,000	**1,850,000**
재원 조달		370,000	370,000	370,000	370,000	370,000	**1,85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시비)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시 비							
기 타 (미래교육지구 공모사업비)		370,000	370,000	370,000	370,000	370,000	**1,850,000**

【입법예고 제출 의견】

「대구광역시 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

반대 의견서

○ 성명(단체명) : 세움학부모연합
○ 주　　소 : 대구 서구 큰장로 **81**
○ 전 화 번 호 : **010-8914-1278**
○ 의 견 제 출

●안 제1조(목적): 반대 의견

"미래교육지구"는 현재 다른 지방단체에서는 "혁신교육지구" , "마을교육공동체" 혹은 행복교육지구" 라는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이름은 다르지만 지향점음 동일하다. 그러므로 그에 따른 이 조례로 초래되는 문제점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지역의 교육역량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지역 사회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 너무도 추상적인 목적이며 학교내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검증된 전문적인 인력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교육을 지역으로 확장시켜 지역 사업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상당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 안 제2조 정의: 반대 의견

2. "미래교육협력지구"란 미래교육지구사업을 위해 교육부 또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이하 "관내"라 한다)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동일 연령층의 청소년을 말한다.
3.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 교육청,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민, 관, 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민, 관, 학 거버넌스"란 미래교육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행정기관, 교육 관련 기관, 단체, 학교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말한다.

●안 제3조(사업의 범위) :

1. 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
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3.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활동 및 축제 지원
4. 지역사회 및 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특화 사업
5. 교육 관련 인적, 물적 자원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6. 교육기반시설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민, 관, 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8.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평가 및 성과 보고
9.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헌법,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위반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④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1항에 의해 교육과정은 학교가 운영하는 것이고, 학교의 교과(敎科)도 대통령만 정할 수 있다.

● ‘미래교육지구’는 전교조 ‘혁신학교’를 학교를 넘어 지역으로 확장한 개념으로써, 조례에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 이는 고(故) 박원순 시장의 ‘마포구 성미산 마을’을 롤모델로 하여 자기의 편향된 사상과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간섭하며, ‘학교의 교육력’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교사의 교권, 학생의 학습권, 부모의 자녀교육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본다.

● 학생은 정규교육 과정에 따라 학습의 권리, 안전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조례제정의 저의는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여, 학교를 자기의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밖에 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대통령만 정하는 교과도 수십 년간 교육 전문가들이 ‘교육 분야’에서 아이들의 정신적·육체적 성장과 발달 과정에 따라 쌓아온 학문과 연구, 경험, 통계의 축적에 의해 확립된 것이라 이미 정해져 있다. 교과를 아무나 정하고, 교육과정을 아무나 개발할 수 있다면 교육학, 사범대학이 있을 필요도 없고 어려운 임용고시를 통과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 이는 교사 자격이 없는 편향된 활동가들이 전문 인력이랍시고 협의체나 네트워크 구축해서 학교장의 권한을 허물고 ‘학교 교육과정’ 내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즉, 입찰

이 아니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외부에서 학교 교육과정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교사를 '미래교육지구'로 파송하라고 요구하거나, 누구라도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함부로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 손쉬운 지방의회 조례제정을 통해, 자기의 편향된 사상과 이념을 아이들에게 세뇌하기 위해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혈세를 교사 자격증도 없는 활동가들에게 투입하여 그들에게 직업을 만들어주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

[2] 미래교육지구**(**혁신교육지구**)** 사업의 교육내용

2-1) 민주시민교육

<잘못된 민주시민교육의 실제적인 사례**>**

2018년 민주시민교육 교사 컨퍼런스 **(2018.11.23 ~ 11.24** 부산한화리조트**)**

□ 컨퍼런스 개요

○ 행사명 : '학교시민교육의 길을 묻다'

○ 일 시 : **2018. 11. 23.(**금**) 13:30 ~ 11. 24.(**토**) 16:00**

○ 장 소 : 부산 한화리조트

○ 주최 및 주관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KEDI)**

○ 참석 대상 : 총 **170**명 내외

- 교육부 : 학교혁신지원실장, 민주시민교육과장, 담당 사무관·연구사
- 한국교육개발원 : 민주시민교육연구실 실장 및 연구원 약 **5**명
- 교육청 : **17**개 시·도 민주시민교육·학생자치 담당 장학사 **34**명
- 교사 : **17**개 시·도 네트워크 참여교원 약 **120**명**(**각 지역별로 **7**명 선발**)**

주강사 중앙대 김누리 교수가 자유시장경제 반대, **68**혁명**(**문화 맑시즘: 동성애 옹호 및 젠더 페미니즘**)** 수용, 초등학생 데모 장려, 청소년 성**(**性**)** 해방 등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는 상반된 내용을 강의했다. 특히, 성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이 아이들에게 죄의식을 갖게 하고 저항정신을 위축해서, 부모와 어른의 권위에 굴종하게 되어 권위에 저항할 수 없게 만든다는 궤변을 피력했다. 이처럼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으로 무분별한 성해방 교육과 모든 권위를 해체하려는 저항정신 등 상당히 왜곡, 편향된 내용들이 전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2) 포괄적 성교육 : 성**(**性**)** 혁명 교육

● 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며, 청소년들에게 성을 즐길 수 있는 권리로 표현하고, 낙태를 옹호하는 포르노 수준의 성교육

2-3) 노동인권 교육

● 사용자를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자본가로 인식하도록 만들어 사용자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하고, 사용자를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악덕 사업주로 연출하며, 근로자를 임금노예로 묘사하여 근로계약을 맺기도 전부터 근로관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형성시키고, 합법 파업이면 남용해도 괜찮다는 취지의 교육

[집중분석] 현직 교사가 본 서울교육청의 《노동인권지도자료》
人權 교육 미명 아래 '갈등론적' 관점에서 세상 보게 해
글 : 정석주**(**필명**)** 고교 교사
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E&nNewsNumb=201905100029

조선일보. 사회 **>**
서울교육청 교재에 "파업 어려운 우리나라"
교육계 "편향된 노동관 우려"
곽수근 기자 김연주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1/09/HEK6SCWZFZFJVDL5UJOWLTU6PE/

●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부여되는 '보편성'을 지닌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대한민국헌법」 제**33**조**)**이 있을 뿐, 근로자에게만 따로 적용되는 '인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 '노동인권'이란 노동계가 '노동권'에 '인권'을 혼합시켜 만들어낸 용어로써, 노동권을 인권의 위치로 격상시켜 국민들에게 노동권과 인권의 가치를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노동권이 경영권보다 최우선적으로 보장, 보호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지극히 부당한 노동계 편향적인 용어이다.

● 우리나라 대법원은 경영권이 노동권보다 더 기초적인 권리이므로, 양자가 충돌하는 경우 경영권이 우선적으로 보호, 보장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2003.7.22.** 선고 **2002**도**7225** 판결**)**

2-4) 성소수자 **(**동성간 성행위자, 성전환자 등**)** 인권 교육

● 잘못된 인권 개념: 보편적 인권이 아닌, 상대적 인권으로 갈등과 혼란을 초래
상대적 인권의 문제점

● 특정 집단에게 편향적 권리를 부여한다. 예**)** 노동인권, 학생인권, 여성인권, 외국인 인권, 성소수자 인권 등

● 그 결과, 편가르기로 사회적 갈등 심화

강자 (가해자)	부르주아	남성	원주민 (국민)	성 다수자	부모	교사
약자 (피해자)	프롤레타리아트	여성	이주민 (외국인)	성 소수자	자녀(아동)	학생

< 서울시 교육청 직무연수 자료 **>**

2-5) 다문화주의 **(**문화 다양성**)** 교육

※ 다문화주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우리 땅에 들어와 살며, 우리 사회로의 적응과 대한민국 교육으로의 통합 과정을 배제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전통, 대한민국 국가 및 국민 주권이 역차별당하는 결과를 낳는다.

가. 외국인에 대한 보편적 평등주의

대한민국에 아무 책임과 의무가 없는 외국인에 대하여 '평등주의'가 아닌 '상호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충돌한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6조에서 국민과 외국인을 엄연히 구분하였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

나. 경기도 등록 외국인 총 **369,028**명 중 **165,657**명이 중국인 및 조선족 **(2022**년 **9**월 **30**일, 법무부**)**으로, 경기도 전체 등록 외국인 중 **44.89%**가 중국인 및 조선족인데,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해줘도 중국인은 중국의 법을 따라 당연히 대한민국이 아닌,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

다. 국내 거주 이슬람 인구가 **40**만 명 **(2021**년 통계**)**에 달한다. 그 무슬림들이 지금은 경기도에 소수일지라도 계속 개악되고 있는 난민법과 국적법 등에 따라 경기도로 몰려들어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테러와 범죄로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이슬람은 중국인 못지않게 매우 위험하다.

● 현재 그들은 다문화주의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인권교육을 받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사유에 따라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종교, 언어 등에 따른 차별금지를 요구하고, 대한민국 국가 및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자기네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2-6) 기초학력 미달 우려

● 가**)** 교사 자격도 없는 편향된 활동가들에게, 나**)** 교과서도 없고 정규교육과정도 아닌 수준 낮은 내용의, 다**)** 무슨 수업을 했는지, 정말 수업을 했는지 추적할 수도 없는 라**)** 불필요한 명목의 수업을 합법적으로 마음껏 하도록 장을 열어주고, 마**)** 편향된 활동가

들에게 직업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임

[1] 학교의 교육력 약화

대한민국은 교육제도가 너무 잘돼있기 때문에 의회가 나서서 학교의 교육력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편향된 사상과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교과에도 없는 불필요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이 오히려 학교의 교육력을 약화시킨다.

[2] 교육이 아니라, 사업을 위한 조례

● 그러므로 이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는 주체는 따로 정해져 있었다고 본다.

● 안 제 7조(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10조(운영협의회의 구성 등), 안 제13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반대의견

미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

대구광역시 서구

수신 세움 학부모 연합 귀중(대구광역시 서구 큰장로 81)
(경유)
제목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서 검토·결정 회신**

1.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점에 감사의 말씀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에 대하여 검토,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의견의 입법 반영 여부** : **미반영** (사유: 붙임 검토의견서 참조)

2. 그 밖의 대구서구미래교육지구사업에 대한 궁금중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교육청소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입법예고 결과 검토의견서 1부. 끝.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주무관	교육청소년팀 장	교육청소년과 전결 2023. 9. 11. 장
홍현미	신세정	한미향

협조자

시행 교육청소년과-9053 (2023. 9. 11.) 접수

우 41777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 서구청 (평리동) / https://www.dgs.go.kr

전화번호 053-663-2193 팩스번호 053-663-5642 / redqueen@korea.kr / 비공개(6)

당신의 존중과 배려에 미소 · 친절로 답하겠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입법예고 결과 검토의견서(제8조 관련)

예 고 안	제출자 및 의견	주관부서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출자 : 세움학부모연합 (대구 서구 큰장로 81(내당2,3동)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와 대구광역시 교육청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대구광역시 서구 각급 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역량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지역사회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이 추상적이며, 학교내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검증된 전문적인 인력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교육을 지역으로 확장시켜 지역사업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상당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목적의 뜻이 더 큰규모의 이상적인 상태나 결과를 나타내므로 추상적일 수 있으나 목표나 세부추진계획을 통해서 구체화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대구미래교육지구사업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활성화, 일반고 역량강화 교육을 포함한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 돌봄활동, 학습지원 등 지역의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정치적인 의도와는 무관하며. 교육격차해소와 공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임
안 제2조(정의) 3. "미래교육지구사업" 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 라 한다)가 시 교육청,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 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헌법,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위반 학생은 정규교육 과정에 따라 학습의 권리, 안전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조례제정의 저의는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여, 학교를 자기의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밖에 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하 장문 생략)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학교 정규과정을 침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교육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교권침해와 정치와는 무관함. ▸조례제정의 목적은 학생들의 교육 역량을 향상시키고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구와 시 교육청,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과 미래교육지구의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안 제3조(사업의 범위) 1. 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 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3.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활동 및 축제 지원 4. 지역사회 및 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특화 사업 5. 교육 관련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2] 미래교육지구(혁신교육지구) 사업의 교육내용 - 잘못된 민주시민교육 - 포괄적 성교육 - 노동인권 교육 - 성소수자 인권교육 - 다문화주의교육 - 외국인에 대한 보편적 평등주의 - 기초학력 미달	▸대구미래교육지구사업의 내용과는 상반된 내용으로 미래교육지구사업의 본질에 맞지 않는 해석임 ▸미래교육지구사업의 주 내용은 방과후 초등학생 틈새돌봄, 지역아동센터 학습지원, 고등학교 역량강화교육지원,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 등으로 마을과 학교가 함께 아이들을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교육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안 제7조(센터 설치 및 운영), 안제10조(운영협의회의 구성 등), 안 제13조(실무협의회의 구성)	○ 미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	▸대구미래교육지구사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아이디어 공유, 등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한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돌보기 위해서는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이 필수적임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table>
<tr><td>관리번호</td><td colspan="4">2023A대구서구037</td></tr>
<tr><td>정 책 명</td><td colspan="4">대구광역시 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td></tr>
<tr><td rowspan="3">소관부서</td><td>기관명</td><td colspan="3">대구광역시 서구</td></tr>
<tr><td>부서명</td><td colspan="3">교육청소년과</td></tr>
<tr><td>담당자명</td><td>홍현미</td><td>전화번호</td><td>053-663-2193</td></tr>
<tr><td>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td><td colspan="4">2023년 8월 24일</td></tr>
<tr><td>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교육청소년과)</td><td colspan="4">대구광역시 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평가서 작성 점검포인트 1~4에 "아니오" 혹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체크하고 개선사항 없음으로 작성하였음.</td></tr>
<tr><td>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td><td colspan="4">☐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 해당 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은 제1조 ~ 제3조(목적, 정의, 사업의 범위), 제4조 ~ 제8조(미래교육지구사업 지원), 제9조 ~ 제18조(미래교육지구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 등임.
· 제정안 제10조(운영협의회의 구성 등), 제13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등은 점검포인트 3-1과 관련이 있음. 검토결과 위원회가 특정 성별로 구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성별로 균형 있는 참여를 위한 조치사항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 구성 시 성별 고려에 대한 명시를 제안함.
<table>
<tr><th>구분</th><th>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th><th>개선안
(법령 수정안)</th><th>검토사유</th></tr>
<tr><td>1</td><td>제10조(운영협의회의 구성 등) ① 운영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하 생략</td><td>제10조(운영협의회의 구성 등) ① 운영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하 생략</td><td></td></tr>
<tr><td>2</td><td>제13조(실무협의회의 구성) ① 실무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동위원장은 구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 과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④항 생략
⑤ 실무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td><td>제13조(실무협의회의 구성) ① 실무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동위원장은 구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 과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④항 생략
⑤ 실무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분과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td><td></td></tr>
</table></td></tr>
<tr><td>검토의견</td><td colspan="4"></td></tr>
</table>

반영계획서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황연희/053-663-2544)

교육청소년과장 귀하